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10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0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2. 경영전략, 조직 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주

③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상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차대조표 상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

제2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등

제3조(등록요건) ①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직전년도말 기준 연계대출 규모(연계대출 잔액을 의미한다. 이하 이 영에서 같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계대출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
2. 연계대출 규모가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경우: 10억원
3. 연계대출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경우: 30억원

②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관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인력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갖추는 것
2. 다음 각 목의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추는 것

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기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나. 사무실 등 충분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다.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라.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③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2. 이용자 보호에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

3.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

④ 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내부통제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법 제17조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것

2. 법 제18조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이해상충방지 체계를 갖출 것

⑤ 법 제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⑥ 법 제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다른 회사와 합병·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이를 완화하여 고시로 정할 수 있다.

⑦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건전한 재무상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건전성을 충족할 수 있는 상태

2. 사회적 신용: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에 적합한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최근 3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 제56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나.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다.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라.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법령(금융관련법령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을 말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이상의 조치(이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받은 후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을 것

- 1) 업무의 전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
- 2) 업무의 일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2년
- 3)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마.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를 충족할 수 있는 상태

제4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서
5.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6. 연계대출 규모에 관한 사항
7.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8. 대주주(법 제5조제1항제7호의 대주주를 의미한다. 이하 이 영에서 같다)에 관한 사항
9.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2. 본점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3.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4.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6. 인력,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등록신청일 현재 대주주의 성명이나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8. 대주주가 법 제5조제1항제7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 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록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5조제3항 후단에 따라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록의 신청과 검토, 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등록유지요건의 완화) 법 제5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우: 제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유지요건은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다음 회계연도말까지는 그 유지요

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5조제1항제7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유지할 것

가. 대주주가 별표 1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마목1) 및 3)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본다.

나. 대주주가 별표 1 제4호 또는 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마목1)·3) 및 제4호라목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보고, 제4호라목 중 “최근 3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3년간”으로,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로 본다.

제6조(임원의 자격요건)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무정지, 업무집행정지 또는 정직요구(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던다면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의 제재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제7조(변경등록) ①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변경등록신청서
2.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증 원본

②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표자, 임원, 대주주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 이하를 보유한 주주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지분율이 변경된 경우
3. 자기자본 및 연계대출 규모에 관한 변경 사항이 법 제46조에 따른 보고서에 반영되어 제출되는 경우(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7조에 따른 변경등록에 관하여 변경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상호의 제한)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란 P2P lending, Marketplace lending(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이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장 영업행위 규칙

제9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 법 제10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록 내역(상호, 본점소재지를 포함한다)
2. 이용자에 대한 상담 업무 시간, 방식,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
4.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청산업무 처리절차
5.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0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수수료 수취)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플랫폼에 공시한 바에 따라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연계대출의 만기 이전에 차입자가 조기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조기상환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비용과 유사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법 제11조제3항의 수수료의 부과기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별 상품에 대한 이용자별 수수료율(차입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는 연계대출에 대한 이자와 구분한다)
2. 수수료의 부과 방식
3. 수수료의 부과 시점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1조(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 관련 준수사항) ① 법 제1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계대출 금액의 100분의 80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연체율이 100분의 3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연체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새로운 연계투자를 하지 아니할 것
2. 동일 차입자에 대한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 금액의 총합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를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이용자에

게 확약(다만, 법 제12조제4항제1호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은 제외한다)하지 아니할 것

4.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에 따른 원리금을 다른 투자자들의 원리금에 우선하여 회수하지 아니할 것
5.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에 따른 원리금 수취권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양도를 하지 아니할 것
6. 제30조제2항제1호의 여신금융기관이 연계투자의 의사를 표시한 연계대출에 대해서는 연계대출 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를 하지 아니할 것
7. 그 밖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건전성 유지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③ 법 제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산정방식과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4항제2호의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 잔액”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 금액의 총합에서 상환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본다.
2. 제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2조제4항제2호 및 이 영 제11조제2항제2호의 “자기자본”이란 제2조제3항에서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준비금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본다.

④ 법 제1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영업일 이내까지 공시할 것
2. 법 제10조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를 한 상품과 그 밖의 상품을 비교하여 공시할 것

제12조(그 밖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 법 제12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차입자에게 연계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이자 및 법 제11조에 따른 수수료 이외의 금원을 요구하지 아니할 것
2. 투자자(투자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제공받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3.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연체율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연체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리 의무를 다할 것
6.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 이용자 등에 대한 연계대출 또는 연계투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것

7.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자신 또는 자신의 대주주 및 임직원에게 연계대출,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한 연계대출을 하거나 제3자에게 연계대출을 하지 아니할 것

8. 그 밖에 연계대출 및 연계투자 상품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3조(업무) ① 법 제13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3호에 따른 원리금수취권 양도·양수의 중개 업무를 위한 원리금수취권의 가치평가업무
2. 법 제13조제4호에 따른 차입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신용평가모형의 개발·운영에 관한 업무

② 법 제13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신용조회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금융투자업
3. 「보험업법」 제91조에 따른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 업무

4.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전자금융업
5. 대출의 중개 및 주선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업무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부수업무의 신고 등) ① 법 제14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영위에 따른 이용자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영위하려는 부수업무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명칭
2. 부수업무의 신고일자
3. 부수업무의 개시 예정일자
4. 부수업무의 내용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제한명령이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다만,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1. 준법감시인의 업무
2. 내부감사업무
3. 위험관리업무
4. 차입자에 대한 신용위험의 분석·평가업무
5. 법 제23조에 따른 연계투자계약의 체결 등 업무
6. 법 제24조에 따른 연계대출계약의 체결 등 업무
7. 연계대출계약의 심사·승인 및 해지 업무
8.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연계대출채권 등 관리 업무
9. 투자자 모집(연계투자 신청서 접수, 연계투자 신청서 및 법 제21조제1항·제2항에 따른 투자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업무

②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등록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 영업중단 등이 발생한 경우, 법 제27조제4항의 청산업무 처리절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16조(회계처리의 구분)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재산”이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적립한 준비금 등을 말한다.

제17조(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내부통제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법 제12조제4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연계투자를 말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지침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이 업무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4.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의 금융관련법령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 기준의 제정이나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8. 이해상충의 파악·평가와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변경하거나, 법 제17조제2항의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이사회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하여 법령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등을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광고) ① 법 제1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거짓 또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2.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다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연계투자 및 연계대출 상품이 불리하다고 광고하는 행위

②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연계투자 또는 연계대출 광고를 받은 고객이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한 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광고하는 행위
2. 다른 종류의 상품에 대하여 광고하는 행위. 이 경우 다른 종류의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구분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1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투자 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부터 제1호에 따른 설명을 받고서 투자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
3.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4. 연계투자 상품 광고를 하는 자, 연계투자 상품의 내용, 연계투자 상품 광고의 매체·크기·시간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법 제1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계투자 상품의 명칭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상호(또는 온라인플랫폼의 명칭)를 함께 표시할 것
2. 연계투자 상품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제공하는 것임을 명확히 표시할 것
3. 해당 매체의 운영자는 연계투자 상품을 알리는 것이며, 연계투자자는 제1호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표시할 것

⑤ 법 제1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주소와 연락처
2. 이자 외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3. 그 밖에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투자 및 연계대출 광고를 하는 경우, 법 제17조제2항의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4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제19조(차입자에 대한 정보확인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차입자가 개인인 경우

가.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법 제144조에 따른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 사본, 연금증서 중 어느 하나의 소득증명서류

나. 부채 잔액 증명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업을 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한 신용정보조회(이하 “신용정보조회”라 한다)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부동산 등기권리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상 권리관계

및 재산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담보가 있는 연계대출인 경우만 해당한다)

라. 신용정보조회 결과

마. 그 밖에 소득, 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2. 차입자가 법인인 경우

가. 감사보고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인 법인만 해당한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다. 제1호나목, 다목 및 마목의 서류

②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차입자의 소득 및 재산상황

2. 차입자의 신용등급 또는 부채상황

3. 연계대출 채무의 변제능력

4. 해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부터 받은 연계대출 잔액

제20조(투자관련 정보 제공) ①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계투자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연계투자 상품을 말한다.

1. 특정 부동산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을 차입원리금의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연계대출에 대한 연계투자 상품

2. 담보가 있는 연계대출에 대한 연계투자 상품(제1호에 해당하는 상품은 제외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72시간 이내에서 연계투자 상품의 유형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말한다.

③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우편

2. 전화자동응답시스템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투자자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이해하였음을 직접 기재하도록 하는 방법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④ 법 제2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영업일을 말한다.

제21조(연계투자계약의 체결 등) ①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개별 투자 건당 10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계속적·반복적인 연계투자의 기간

2. 제1호의 기간 중 총 투자금액

3. 연계투자 상품 당 투자금액

4. 개별 연계투자 상품에 대한 최대 투자금액

5. 계속적·반복적인 연계투자를 중단하는 방법

③ 투자자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연계투자계약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계투자계약을 체결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그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온라인플랫폼에 투자자가 제3항에 따라 연계투자계약 신청을 철회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연계대출계약의 체결 등) ① 법 제2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출원리금의 변제 순서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2. 채무와 관련된 증명서 발급비용과 발급기한
3. 연계대출계약의 변경 및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4. 대출채권의 추심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사항

②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우편
2. 전화자동응답시스템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투자자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이해하였음을 직접 기재하도록 하는 방법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③ 법 제2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차입자와 날짜별로 원리금, 수수료 및 부대비용 등을 주고받은 내역
2. 담보 관련 서류 등 거래상대방(보증인을 포함한다)이 연계대출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차입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관련 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여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반환요구서)

제23조(약관의 제·개정 등)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정 또는 개정된 금융약관을 적용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를 말한다.

제24조(투자금 및 상환금의 관리)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설립된 은행을 포함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4.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5.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증권금융회사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②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회사와 신설합병함에 따라 그 합병에 의하여 존속되거나 신설되는 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을 양도하는 경우
 2. 제34조제1항제5호의 계약의 인계명령 등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연계대출계약 또는 연계투자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하여 그 계약을 양수하는 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을 양도하는 경우
 3.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③ 법 제2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 따른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등의 우선 지급사유, 지급 시기 및 방법, 그 밖에 우선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중앙기록관리기관(법 제33조의 중앙기록관리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영에서 같다) 및 예치기관(법 제26조제1항의 예치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영에서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또는 예치기관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투자금등을 우선 지급하는 경우 중앙기록관리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예치기관은 예치 또는 신탁받은 투자금등을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의 관리, 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제25조(청산업무 처리절차의 마련) ① 법 제2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리금 상환·배분 업무에 관한 계획

2. 연계대출채권 등의 관리 계획

3. 투자금 및 상환금 관리 계획

4. 연계투자 및 연계대출 계약의 관리 계획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

② 법 제2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

2.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3. 그 밖에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

제26조(손해액의 추정)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투자자에 대한 손해액은 연계투자자로 인하여 투자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에서 그 연계투자자에 대한 원리금수취권의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투자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추정한다.

제27조(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총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과 70억원 중 작은 값을 의미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총 연계대출채권 잔액: 300억원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시행하려는 연계대출의 규모: 21억원

③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말한다.

④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수도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공공운송사업

5. 가스사업

6. 지방도로사업

7. 하수도사업

8. 청소·위생사업

9. 주택사업

10. 의료사업

11. 매장 및 묘지사업
 12. 주차장사업
 13. 토지개발사업
 14. 시장사업
 15. 관광사업
 1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2호의 사회기반시설사업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공공적 사업으로서 지역개발 및 사회기반시설구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 ⑤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또는 국민생활 안정 목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⑥ 법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라, 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연계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17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투자자

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한 총 연계투자 금액(상환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억원

나. 동일한 차입자에 대한 연계투자 금액: 2천만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투자자

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한 총 연계투자 금액: 5천만원(다만, 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연계대출 상품에 대한 총 연계투자 금액은 3천만원)

나. 동일한 차입자에 대한 연계투자 금액: 5백만원

⑦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전문투자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7호의 개인전문투자자를 말한다.

⑧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차입자에 대한 연계대출의 규모가 법 제32조제1항의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유지·관리할 것
2. 투자자의 연계투자 규모가 법 제32조제2항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투자자의 연계투자에 앞서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부터 투자자의 연계투자 금액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관리할 것

제28조(중앙기록관리기관)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차입자 또는 투자자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차입자 또는 투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 및 명칭을 말한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

록번호 및 고유번호를 말한다)

다. 투자자가 법 제32조제2항 단서의 법인투자자, 전문투자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17 제3항 제1호의 투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라. 차입자 또는 투자자가 신청한 연계대출 또는 연계투자 신청 금액 및 신청 일시, 연계대출 또는 연계투자를 실행한 금액 및 실행 일시, 그 밖에 연계대출 또는 연계투자에 관한 자료

2. 연계투자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한 금액

나.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여신금융기관등이 연계투자를 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료에 부수하는 자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에 변경이 있을 경우 그에 관한 자료

② 중앙기록관리기관은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정보의 집중·관리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한 투자자의 연계투자 한도의 관리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에 대한 연계투자 또는 연계대출 관련 정보의 제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③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으로 금융위원회가 지정한다.

1. 그 업무를 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추 것
2. 정관 및 업무규정이 법령에 적합하고 그 업무를 하기에 충분할 것
3.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내부통제기준과 업무 방법을 마련할 것

④ 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공받은 제1항의 자료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할 것
2. 제1항의 자료를 제공받은 날부터 10년간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보관할 것

⑤ 법 제3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24조제5항의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2.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또는 개인정보 주체의 권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29조(원리금수취권의 양도·양수)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제외한 법인

2. 제27조제6항제1호의 투자자

3. 제27조제6항제2호의 투자자로서 직전 3년간 연계투자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5회 이상인 자

② 법 제3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된 양도·양수 계약이 체결되도록 할 것

2.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 및 원리금수취권의 양도·양수에 대한 위험을 설명하고, 해당 내용을 양도인과 양수인이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및 제20조제3항이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받을 것

3. 제1호의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확인하여야 하는 차입자의 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양수하려는 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

4. 제1호의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양수인이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양도하려는 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

제30조(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인투자자[「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여신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여신금융기관”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 제27조제7항의 개인전문투자자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여신금융기관(여신금융기관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연계대출에 대한 연계투자 상품: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분의 20

나. 제1호 이외의 연계투자 상품: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분의 40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분의 40

③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투자자의 연계투자에 앞서 해당 투자자가 여신금융기관등(법 제35조제1항의 “여신금융기관등”을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2. 여신금융기관등에 해당하는 투자자가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계투자를 하는 것임을 확인할 것

3. 투자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및 제20조제2항이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받을 것

가. 투자자가 여신금융기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항
 나. 투자가가 여신금융기관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였다는 사실

④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여신금융기관등의 연계투자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투자자들에게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기에 앞서, 여신금융기관등에게 해당 정보를 미리 제공하지 아니할 것
2. 수수료 등 연계투자 조건 및 연계투자 업무 수행 과정에서 여신금융기관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우대하지 아니할 것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등록·변경에 관한 사항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직접 처리할 것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⑤ 그 밖에 여신금융기관등의 연계투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제31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설립) ①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협회의 임원이 취임을 승낙하였다는 서면

③ 법 제3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란 P2P Lending Association, Marketplace Lending Club(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이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2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업무) 법 제38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직무 및 윤리교육에 관한 업무
2. 광고의 자율심의에 관한 업무
3.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관한 업무
4. 법 제31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준비금 예탁 또는 공제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제33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정관) ① 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산에 관한 사항
2. 임원에 관한 사항
3.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4. 회계에 관한 사항
5.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②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39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변경되는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6장 감독 및 처분

제34조(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① 법 제45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2. 변상 요구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연계대출계약 또는 연계투자계약의 인계명령

6.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7.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② 법 별표 제5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1.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5조,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8조의 죄를 범한 경우

제35조(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별표 2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별표 3 각 호에 따른 권한을 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③ 금융감독원장과 협회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법 제4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43조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
4. 법 제47조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및 이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사무

②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4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출석·의견진술 요구 및 조치 등에 관한 사무

③ 중앙기록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위탁한 연계대출한도와 연계투자한도의 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보관·관리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33조제4항 단서에 따른 자료제공에 관한 사무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도·권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율규제에 관한 사무
3.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용자 민원의 상담·처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3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보관리 실태 점검에 관한 사무

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법 제15조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차입자에 대한 정보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21조에 따른 투자자에 대한 정보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23조에 따른 연계투자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24조에 따른 연계대출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6조에 따른 투자금 및 상환금의 관리에 관한 사무
6. 법 제27조에 따른 연계대출채권 등 관리에 관한 사무
7. 법 제29조에 따른 연계대출채권추심에 관한 사무
8. 법 제32조에 따른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의 확인에 관한 사무

9. 법 제34조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의 양도·양수에 관한 사무

제37조(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 등) ① 법 제49조제1항 또는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49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3회를 말한다.

③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38조(과징금 부과 및 납부)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적은 서면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9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① 법 제52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재산상황 및 그 밖의 사정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

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제40조(가산금)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1조(체납처분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금융위원회의 의결서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3. 납부독촉장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가 끝난 경우: 그 업무종료의 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금융위원회로부터 진행상황에 대한 통보요청이 있는 경우: 그 진행 상황

제42조(환급가산금의 이율) 법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말한다.

부 칙

제7장 벌칙

제43조(과태료)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 제32조 · 제33조 및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및 영 제27조 · 제28조,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제2항 및 부칙 제7조제2항 · 제3항의 개정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법 제32조제2항 · 제3항 및 제33조, 영 제27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28조,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 2021년 6월 1일
2. 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 영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5조제2항의 규정: 2021년 4월 1일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규정: 2020년 8월 27일

제2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에 관한 사항) 법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경과기간 내에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준하는 업무(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등”이라 한다)를 영위하는 자(「대부업 등의 등록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 등의 유효기간이 만료하지 않았더라도 이 영 시행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그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3조(등록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요건을 적용할 때, 이 영

시행 당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등을 영위하는 자는 해당 업무에 따른 직전년도말 기준 연계대출 규모를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명령·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행한 신청·보고,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5조(외국어 상호 사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8조를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그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업무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법 및 이 영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의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③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제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른 거래

제15조제3항제7호다목 중 “제13호 및 제14호”를 “제13호, 제14호 및 제15호”로 한다.

④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에 제18호를 제1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4를 삭제한다.

제2조의12에 제2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의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제15조제2항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제24조의2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⑦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⑧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32호를 제33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⑨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⑩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⑪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3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별표 1] 대주주의 요건 (제3조제6항 관련)

대주주의 요건

구 분	요 건
1. 대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하며, 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그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에 속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기업집단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채무제열(이하 “주채무제열”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제열의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이 경우 금융기관은 부채비율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라. 출자금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차입하여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 마.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 제56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영업의 허가 등이 취소될 당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독립경영자에 해당하거나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동일인관련자의 범위에서 분리되었다고 인정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2. 대주주가 제1호 외의 내국법인(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의 투자목적회사 제외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그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제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제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라.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나.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대주주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가. 등록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등록하려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상당하는营业을 하고 있을 것 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라.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과 관련하여 본국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마. 제1호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5. 대주주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화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주주나 사원(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화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나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나목·다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제2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제3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1호나목 및 제3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라. 제4호의 외국법인인 경우: 제1호나목, 제2호나목(외국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및 제4호다목·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비고

1. 제3조제5항 각 호의 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나목의 대주주의 요건만 적용하고, 제4호 또는 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나목 및 제4호라목의 대주주의 요건만 적용한다. 다만, 최대주주인 법인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이거나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제5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2. 자기자본을 산정함에 있어서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등록하려는 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3. 제4호를 적용할 때 대주주인 외국 법인이 지주회사이어서 제4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등록신청 시에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그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만 해당한다)가 제4호 각 목의 전부나 일부를 충족하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2]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 (제35조제1항 관련)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요건에 대한 심사
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3.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 사유에 대한 심사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겸영업무 신고의 접수
5.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부수업무 신고의 접수
6.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부수업무의 영위를 제한 또는 시정할 것을 명하는 사유에 해당하
는지에 대한 검토
7.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표준약관 신고의 접수 및 해당 표준약
관이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8.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업무 및 재산상태 등에 대한 보고 요청
9. 법 제45조제2호·제3호·제6호에 따른 조치
10. 법 제46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보고서 제출의 접수
11. 법 제47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또는 그의 대주주 및 임직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12. 제3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조치

[별표 3] 금융위원회가 협회의 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 (제35조제2항 관련)

1.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금융약관 제정 및 개정에 관한 보고 또
는 신고의 접수 및 해당 금융약관이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2.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온라인 정보관리 실태 점검결과 보고
의 접수

[별표 4]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기준 (제37조제1항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의 영업정지 기간 또는 영업정지명령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에 가벼운 처분의 영업정지 기간 또는 영업정지명령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기간 또는 영업정지명령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영업정지의 총 기간은 법 제49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50조제2항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 기준

위반행위	해당 조문	영업정지기간	과징금금액
가. 법 제1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또는 이자를 받은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1호	영업정지 6월	5천만원
나. 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정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들을 차별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2호	영업정지 3월	2천5백만원
다. 법 제12조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3호	영업정지 3월	2천5백만원
라. 법 제13조의 업무 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영위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4호	영업정지 3월	2천5백만원
마.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5호	영업정지 3월	2천5백만원
바.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위탁을 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6호	영업정지 3월	2천5백만원
사.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7호	영업정지 3월	2천5백만원
아. 법 제20조제1항·제4항을 위반하여 차입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8호	영업정지 6월	5천만원
자.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입자의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연계대출을 실행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9호	영업정지 6월	5천만원
차. 법 제21조제1항·제4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의 본인 확인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10호	영업정지 6월	5천만원

카. 법 제22조에 따른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11호	영업정지 6월	5천만원
타. 법 제23조제1항·제4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연계대출계약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12호	영업정지 3월	2천5백만원
파. 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투자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13호	영업정지 6월	5천만원
하. 법 제24조제1항·제2항에 따른 차입자에 대한 계약서 교부 또는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14호	영업정지 3월	2천5백만원
거. 법 제24조제3항·제4항을 위반하여 연계대출계약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열람 또는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15호	영업정지 3월	2천5백만원
너. 법 제26조제1항·제3항을 위반하여 투자금등을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지 아니하거나,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등을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16호	영업정지 6월	5천만원
더. 법 제27조에 따른 연계대출채권 등에 관한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17호	영업정지 3월	2천5백만원
러.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18호	영업정지 3월	2천5백만원
머. 법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19호	영업정지 3월	2천5백만원
버. 법 제45조(법 제33조제5항 및 법 제41조가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제20호	영업정지 3월	2천5백만원

[별표 5] 과징금의 부과 기준 (제38조제1항 관련)

1. 과징금의 산정기준

가. 기본과징금의 산정

- 1) 기본과징금은 법 제50조제1항·제2항 및 이 영 별표 4에서 정한 과징금 금액의 상한에 2)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2) 부과기준율은 법 제5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등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나. 기본과징금의 조정

금융위원회는 법 제5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부과기준율 산정 단계에서 고려된 세부 참작사항은 제외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감사의 협조 여부, 위반상태의 해소나 위반행위의 예방을 위한 노력,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에 따라 산정한 기본과징금 금액을 감경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 1) 금융위원회는 위반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등 특별한 사정, 금융시장 또는 경제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배상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고려할 때, 나목에 따라 조정한 과징금 금액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 2) 금융위원회는 위반자의 지급불능·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 외에 실효성 있는 다른 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목에 따라 조정한 과징금 금액이 소액인 경우,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2. 세부기준

부과기준율 등 기본과징금의 산정, 기본과징금의 조정, 부과과징금의 결정,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6] 과태료의 부과 기준 (제43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호	1,000
나. 법 제9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	법 제57조제2항제1호	600
다.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57조제2항제2호	900
라. 법 제1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또는 이자를 받은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2호	1,500
마.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온라인플랫폼에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7조제2항제3호	900
바. 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정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들을 차별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3호	1,500
사. 법 제12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4호	1,500
아. 법 제13조의 업무 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영위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5호	5,000
자. 법 제14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7조제2항제4호	1,800
차.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위탁을 한 경우	법 제57조제2항제5호	1,800
카.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경우	법 제57조제2항제6호	1,800
타. 법 제17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7조제2항제7호	1,800
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지 않거나,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7조제2항제8호	360
하. 법 제18조에 따른 이해상충 관리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57조제2항제9호	1,800

거.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경우	법 제57조제2항제10호	3,000
너.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입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7조제2항제11호	1,800
더.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입자의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연계대출을 실행한 경우	법 제57조제2항제12호	1,800
러. 법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차입자에 관한 정보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 제57조제2항제13호	1,800
머.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의 본인 확인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7조제2항제14호	1,800
버. 법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 제57조제2항제15호	1,800
서. 법 제22조제1항·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6호	3,000
어.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7호	3,000
저. 법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항을 누락하였거나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8호	3,000
처. 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연체사실과 그 사유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9호	3,000
커.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자에 대한 계약서류 교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57조제2항제16호	1,800
터. 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투자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7조제2항제17호	1,800
퍼. 법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연계투자계약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7조제2항제18호	1,800
허.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차입자에 대한 계약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57조제2항제19호	1,800
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차입자에 대한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57조제2항제20호	1,800
노. 법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연계투자계약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7조제2항제21호	1,800
도.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연계대출계약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법 제57조제2항제22호	1,800
로.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공시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7조제2항제23호	1,800
모.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7조제2항제24호	1,800
보.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0호	1,000
소. 법 제26조에 따른 투자금등에 관한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1호	5,000
오. 법 제27조에 따른 연계대출채권 등에 관한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2호	5,000
조.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정보관리 실태 점검 및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57조제2항제25호	1,800

조. 법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7조제2항제26호	1,800
코. 법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한도 준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3호	3,000
토.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앙기록관리기관에 이용자에게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7조제2항제27호	1,800
포.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32조제3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기록관리기관에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7조제2항제28호	1,800
호. 법 제33조제3항·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 대한 자료를 보관·관리하지 아니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법 제57조제2항제29호	1,800
구. 법 제34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4호	1,500
누.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5호	3,000
두. 법인인 자가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투자를 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 제16호	3,000
루. 법인이 아닌 자가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투자를 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 제16호	1,500 (다만, 임직원인 경우 600만원으로 한다.)
무. 법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7호	3,000
부.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회에 가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8호	3,000
수.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가입을 거부하거나 가입에 부당한 조건을 부과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9호	3,000
우. 법 제43조제2항(법 제33조제5항 및 제41조가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57조제2항제30호	600
주. 법인인 자가 법 제44조(법 제33조제5항 및 제41조가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20호	5,000
추.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44조(법 제33조제5항 및 제41조가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20호	2,500 (다만, 임직원인 경우 1,000만원으로 한다)
쿠. 법인인 자가 제44조제3항(법 제33조제5항 및 제41조가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21호	3,000
투. 법인이 아닌 자가 제44조제3항(법 제33조제5항 및 제41조가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21호	1,500 (다만, 임직원인 경우 600만원으로 한다)
푸.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거짓의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57조제2항제31호	1,800

후. 법인인 자가 법 제47조를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57조제2항제32호	1,800
그.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47조를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57조제2항제32호	900 (다만, 임직원인 경우 360만원으로 한다.)